

#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안 번호	9-336
----------	-------

제출년월일 : 2023. 11. 7.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환경재단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반영
  - 안산시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 일부 조문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

## 법적근거

-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 주요내용

- 재단 사업대상 및 재원을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맞게 개정(안 제4조, 제26조)
- 임원 결격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과 일치(안 제8조)
-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이사 임기를 임명권자(시장) 임기와 일치(안 제9조)
-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등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 정산 및 반납 명시(안 제27조)

정관 일부 개정안 :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안 전문 포함)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방침결정문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정관 : 【붙임 5】

**【붙임 1】**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안산환경재단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따른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제1항의 “선임직 임원(이사, 감사)은”을 “선임직 임원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의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때

제17조 제1항의 제4의2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중 “다음 각 호의 1에 관하여는”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하고, 제1호 중 “취임” 을 “선임” 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붙임” 을 “[별표]” 로 한다.

제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안산시 안산환경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 및 결산) ①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등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 정산 및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36조 중 “민법” 을 “「민법」” 으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로 한다.

“붙임” 을 “[별표]” 로 하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을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제24조 제2항 관련)” 으로 한다.

**부 칙 <정관 제6호, 2000.0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2000.00.00.)  
부터 시행한다.



현행	일부개정안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p>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② 임원이 제1항에----- ----- ----- -----.</p>
<p><b>제9조(임원의 임기)</b> ① 대표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직 임원(이사, 감사)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p>	<p><b>제9조(임원의 임기)</b> ①----- ----- -----선임직 임원은----- -----.</p>
<p><u>&lt;신설&gt;</u></p> <p>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p> <p>③ 선임직 이사,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현행	일부개정안
<p>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u>보선하지 않는다.</u></p>	
<p><b>제10조(임원의 해임) (생략)</b></p> <p>1. ~ 4. (생략)</p> <p>5. <u>민법 또는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때</u></p>	<p><b>제10조(임원의 해임) (생략)</b></p> <p>1. ~ 4.(현행과 같음)</p> <p>5. <u>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때</u></p>
<p><b>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 ①</b>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 ~ 8. (생략)</p> <p><u>&lt;신설&gt;</u></p> <p>② (생략)</p>	<p><b>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 ①</b>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4.(현행과 같음)</p> <p><u>4의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u></p> <p>5. ~8.(현행과 같음)</p> <p><u>9.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b>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p> <p>1. 이사의 <u>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b>제2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b>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1. 이사의 <u>선임</u>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p> <p>2. (현행과 같음)</p>
<p><b>제24조(재산의 구분) ①</b>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② 기본재산은 재단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p>	<p><b>제24조(재산의 구분) ①</b> (현행과 같음)</p> <p>②----- ----- -----</p>

현행	일부개정안
<p>붙임과 같다.</p> <p>③ (생략)</p> <p><b>제26조(수입과 지출)</b> ①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수익사업,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p> <p>② 생략</p> <p><b>제27조(잉여금의 처리)</b>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p> <p><b>제28조(회계연도)</b>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p> <p><b>제36조(준용규정)</b>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p> <p>■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붙임]</p>	<p>[별표]와 같다.</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26조(수입과 지출)</b> ①----- -----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7조(잉여금의 처리 및 결산)</b> ①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등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 정산 및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28조(회계연도)</b> ----- ----- 따른다.</p> <p><b>제36조(준용규정)</b> ----- ----- 「민법」----- -----,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p> <p><b>부 칙 &lt;정관 제6호, 2000.00.00.&gt;</b> <b>제1조(시행일)</b> 이 정관은 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2000.00.00.)부터 시행한다.</p> <p>■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별표]</p>

현 행	일부개정안
<u>설립당시의 기본재산</u> (생략)	<u>설립당시의 기본재산(제24조 제2항 관련)</u> (현행과 같음)